



서대문구보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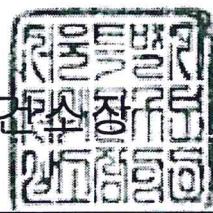
수신자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
(경유)

제목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횟수 기준 및 소독실시 철저 안내

- 구정발전과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.
- 귀하의 시설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소독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(타구 소독업체도 가능)로 부터 소독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
- 아울러 소독 미실시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자체적으로 실시한 방역소독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된 소독업체(타구 소독업체 가능)에 위탁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관련 소독횟수 기준 1부. 끝.

서대문구보건소장



★주무관

박주영

감염병관리팀장

장진섭

지역건강과장

02/08
김정수

협조자

시행 지역건강과-2767 (2018.2.9.) 접수 ()

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
전화 02-330-1886 /전송

/ <http://www.sdm.go.kr>
/ 부분공개(7)

[별표 7]

소독횟수 기준(제36조제4항 관련)

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	소 독 회 수	
	4월부터 9월까지	10월부터 3월까지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	1회 이상/ 1개월	1회 이상/ 2개월
2.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점업체		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무시설		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		
5.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		
6.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	1회 이상/ 2개월	1회 이상/ 3개월
7. 「주택법」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		
8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		
9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		
10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		
11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		
1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)		
13.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	1회 이상/ 3개월	1회 이상/ 6개월